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6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평창군에서 시행하여야 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한국수어 발전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 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한국수화언어 교육·보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2)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안 제5조 ~ 제6조)
- 3) 농인 등의 편의 증진 및 민간에의 권장 사항(안 제7조 ~ 제8조)
- 4) 포상 근거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 군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하려는 점 등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통해 평창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화언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보급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
2.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3.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4.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6.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7. 한국수어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농인들의 편의 증진) ①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해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고 농인들의 정보 접근이 쉽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공공시설에는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농인등의 정보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편의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등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며.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2)·(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제17조(한국수어의 날) ①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 경비 및 교육·상담, 수어 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나. 관련 조 문

- 조례안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사업)
- 조례안 제6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관련법 등의 지원 복지시책으로 계상

나. 추계 결과 : 총221백만원(2023년)

- 평창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 200백만원
- 평창군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 : 21백만원
 - 농아인대회, 농아인문화탐방, 농아인가족캠프, 농아인민속놀이, 수어문화제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군비)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1,222,821
국고보조금	0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0
군비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1,222,821
세 출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1,222,821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1,222,821
재원 조달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1,222,821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도비보조금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군비	221,300	232,365	243,983	256,182	268,991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연락처	(033) 330-2150